##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71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문대림・김한규・위성곤

전현희 • 윤종군 • 이병진

박지원 • 정춘생 • 문정복

조인철 · 김재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 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역할"을 "역할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단체의 <u>역할</u> ) (생 략)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u>등</u> )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u>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u>		
	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u>한다.</u>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u>방안</u>		
<u>11.</u>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